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- □ 존경하는 성흠제 위원장님!□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선배 동료 위원님 여러분!민생당 김소영 의원입니다.
- □ 오늘 본 의원이 발의한
 「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한
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.
- □ 본 개정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.
- □ 화재, 지진 등 재난 발생 시 노인, 장애인과 같은 안전취약계층은 신체적·정신적 제약으로 인하여 타인의 도움 없이는 독립적인 대피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.
- □ 이에 시장으로 하여금 안전취약계층의 특성 및 유형 등을 고려하여, 대피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함을 규정함으로써 재난 발생 시 안전취약계층의 생명·신체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.
- □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, 어린이, 노인, 장애인 등이 같은 행동요령으로

재난에 대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. 본 개정안을 통해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이 보편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

□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,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